|  |  |  |
| --- | --- | --- |
|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의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고지서**  각 관련 부서:  <국무원의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서의 법인과 기타 조직 사회신용코드제도 구축 총체적 방안 비준 및 전달 통지문>(국발[2015]33호),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국판발[2015]50호)와 <<'삼증합일(三證合一)' 등기제도 개혁을 가속화 추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의 관철 및 실행에 관한 공상총국 등 6 부서의 통지>(공상기법자[2015]121호)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5년 9월 29일부터 북경시에서 '삼증합일(三證合一), 일조일마(一照一碼)' 등기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기업, 농민전문합작사,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통일사회신용코드가 기재된 영업집조를 심사발급하고 조직기구코드증서, 세무등기증 및 통계등기증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아니한다. 상기 시장주체가 행정심사비준, 은행계좌 개설, 물권등기, 입찰·응찰 등 관련 사무 처리 시 더 이상 조직기구코드증서, 세무등기증, 통계등기증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고지한다.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2015년 9월 |  |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  **“三证合一”登记制度告知书**  各相关部门：  根据《国务院关于批转发展改革委等部门法人和其他组织统一社会信用代码制度建设总体方案的通知》（国发[2015] 33号）、《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推进“三证合一”登记制度改革的意见》（国办发[2015] 50号）和《工商总局等六部门关于贯彻落实<国务院办公厅关于加快推进“三证合一”登记制度改革的意见>的通知》(国商企注字[2015] 121号)的有关规定，自2015年9月29日起，本市全面实行“三证合一、一照一码”登记制度。企业、农民专业合作社、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申请登记的，有工商行政管理部门核发加载统一社会信用代码的营业执照，不再发放组织机构代码证、税务登记证和统计登记证。上述市场主题在办理行政审批、银行开户、物权登记、招投标等各类相关事务时，不再要求提供组织机构代码证、税务登记证、统计登记证。  特此告知。  北京市工商行政管理局  2015年9月 |